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허목”을 “제2조제1호고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 ----- 제2조제1호고목 ----- ----- -----.
<u><신 설></u>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 <u>년 지원에 관한 법률</u> 」
<u>1.</u> ~ <u>5.</u> (생 략)	<u>2.</u> ~ <u>7.</u>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022